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14. 7. 1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정책추진·역점사업·주요사회 이슈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좌 기능 강화

2. 개정근거

가.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5조(정원의 관리) 및 제16조(별정직공무원)
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

3. 주요내용

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함에 따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함.(안 별표 3)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생략

- 다. 교육규제 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- 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
- 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평가제외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3,276				
정무직 소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소계	3,085				
3급	7		7		
4급	26	1	21	4	
5급 이하	3,045				
전문경력관	7				
연구직 소계	2				
연구사	2				
별정직 소계	2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소계	186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분청 (직속기 관포함)</th> <th>교육지원 청</th> <th>공립의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,27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소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소계</td> <td>3,08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6</td> <td>1</td> <td>21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</td> <td>3,04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특정직 소계</td> <td>18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15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총계	3,276					정무직 소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소계	3,087					3급	7		7			4급	26	1	21	4		5급 이하	3,047					전문경력관	7					연구직 소계	2					연구사	2					특정직 소계	186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분청 (직속기 관포함)</th> <th>교육지원 청</th> <th>공립의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,27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소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소계</td> <td>3,08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6</td> <td>1</td> <td>21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</td> <td>3,04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상당 이하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특정직 소계</td> <td>18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15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총계	3,276					정무직 소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소계	3,085					3급	7		7			4급	26	1	21	4		5급 이하	3,045					전문경력관	7					연구직 소계	2					연구사	2					별정직 소계	2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특정직 소계	186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2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소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소계	3,08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7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6	1	21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	3,0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정직 소계	1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분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2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소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소계	3,08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7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6	1	21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	3,0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정직 소계	1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

<p>관계법령 및 참고자료</p>	<p>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 <p>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<u>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<p>제16조(별정직 정원) ① 별정직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·상당 계급별로 책정하되,</u> 그 수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□ 지방공무원법</p> <p>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별정직공무원 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</u>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